

제 412 호

1973.11.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보

차 례

이 시보에 실린 바의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을 수 있음.

1973. 11. 1  
서울특별시 시민과

- ◎ 고 시
  - 제 171 호 : 도시계획시설 (수도결정 과지적 승인) ..... 3
  - 제 172 호 : 1973 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 및 ..... 3  
각특별회계
  - 제 173 호 : 도시계획시설 (광장) 지적승인 ..... 4  
(일부변경)
  - 제 174 호 : 사료성분 등록고시 ..... 5
- ◎ 공 고
  - 제 201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 ..... 6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중개정
  - 제 202 호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 ..... 34  
지정 및 지정취소공고
  - 제 204 호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완료공고 ..... 38
  - 제 207 호 :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 변경공고 ..... 39
- ◎ 사 령 ..... 39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71 호

도시 계획 시설 (수도)  
결정 과 지적 승인

1. 도시계획시설 (수도) 결정 및 지적 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가. 도시계획 (수도) 시설결정지적조서

건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3.10.27.

서울특별시장

순 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1	수 도	도봉구미아동산 1 - 17 부근	5,100평	
2	"	성북구정능동산 16 - 1 부근	1,400 "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수도권 시설과에 보관합니다.

◎ 서울특별시고시제 172 호

1973 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제 2 회 세입세출 추가경

정예산율 지방자치법 제 1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3.10.13.

서울특별시장

회 계 별	예 산 액
총 계	79,978,171,000 원
일반회계	45,041,069,000 원
특별회계	34,937,102,000 원
주 택 비	2,595,537,000 원

회 계 별	예 산 액
토 지구 획 정 리 비	6,086,395,000 원
지 하 철 건 설 비	12,974,659,000 원
하 수 처 리 장 비	254,168,000 원
건 설 자 재 생 산 비	408,651,000 원
유 료 도 로 비	485,502,000 원
시 민 회 관 비	191,949,000 원
채 해 구 호 사 업 비	62,298,000 원
운 수 사 업 비	1,681,105,000 원
수 도 사 업 비	10,196,838,000 원

◎ 서울특별시고시제 173호

도시 계획 시설 ( 광 장 )  
지적 승인 ( 일부 변경 )

1. 건설부고시제 397 호 ( 73.10.8 ) 로  
일부 변경된 서울 도시 계획 시설  
( 광 장 ) 의 지적 을 다음 과 같이  
승인 하였기 도시 계획 법 제 13 조 와  
건설부고시제 123 호 ( 73.4.4 ) 의

권한 위임 사항 에 따라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 특별시 도시 계획  
과와 송구청 시민 복지 실 에 비치 하  
여 토 지 소유 자 및 이해 관계 인 에 게  
보이 게 한다.

1973.10.30.

서울 특별시 장

지 적 승 인 조 서

광장번호	광 장 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0	남대문광장	남대문로 5가	23,833	(증) 1,520	25,353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 도면 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송구청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174 호  
 사료성분등록고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3.10.30.  
 서울특별시장

사료성분등록사항

등록번호	소재지	공장명	대표성명	사 료		
				종 류	명 칭	용 도
3 ~ 54	동대문구 계기동998	유경사료 공업사	유시련	배합사료	큰 병 아 리 배 합 사 료	부화후대략 13주~ 초산까지 (전기)
3 ~ 55	"	"	"	"	"	부화후대략 13주~ 초산까지 (후기)
3 ~ 57	"	"	"	"	산란 초기 용 배 합 사 료	산란용종계
3 ~ 58	"	"	"	"	부로일러 전기 배 합 사 료	부화후 대략 4 주까지
3 ~ 59	"	"	"	"	부로일러 후기 배 합 사 료	부로일러 후기 (완 성용)
3 ~ 60	"	"	"	"	농축배합사료	양계용배합사료
사 료 성 분 량				유효기간	비 고	
최 소 량		최 대 량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부터 까지		
이상 12.0 %	이상 2.5 %	이하 7.5 %	이하 10.0 %	73.10.30 75.10.29		
12.0 %	2.5 %	7.5 %	10.0 %			
15.0 %	2.0 %	7.0 %	13.0 %			
19.0 %	2.5 %	6.0 %	9.0 %			
16.0 %	2.5 %	6.0 %	10.0 %			
16.0 %	2.0 %	4.5 %	13.0 %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201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한다.

1973.10.26.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 업체지정 및 자금지원요령중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 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 조 ( 목적 ) 이 요령은 상공부고시 제8290 호 및 동 개정고시 (제8550 호, 제8989 호, 제9337 호) 에 의하여 내수산업 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품 생산업체 또는 수출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업체를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이하 지정업체라 한다) 로의 지정과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섬유류 생산자중 섬유시설 등록요

령 ( 상공부고시 제 6238 호, 74.10.6 ) 에 의거 등록을 요하는 자는 동 요령에 의한 등록을 필한자라야 한다.

제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 조 ( 지정절차 ) ①이 요령에 의하여 수출품 생산지정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호의 서식에 의한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이에 공장 소재지를 관할구청 또는 출장소 ( 산업과 ) 에 제출한다.

②전항의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 ( 출장소장 포함 ) 은 신청서의 적격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제서류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다음 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미비할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보완 제출토록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전항에 의하여 구청장

및 출장소장이 전달한 지정신청서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 2에 의한 선정기준과 명점 방법에 의하여 명점하고 50 점 이상인 업체만을 선정 지정하고 이에 미달되는 업체는 신청서를 즉시 신청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제 4 조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 항중 "별표 2 호 서식의 지정서"를 "별표 3 호 서식의 지정서"로 한다.

①시장은 전조에 의하여 선정한 업체를 매월 말일 이내에 지정 공고하고 이를 상공부장관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통고한다.

제 6 조 제 2 항중 "별표 3 호 서식에 의한 지정취소요구"를 "별표 4 호 서식에 의한 지정취소요구"로 하

고 제 4 항중 "년 2 회 ( 3 월 , 9 월 )"를 "월 1 회"로 한다.

제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을 삭제하고 제 3 항 및 제 4 항을 제 1 항 및 제 2 항으로 한다.

제 8 조 제 2 항중 "별표 4 호 서식에 의한 사후관리카드"를 "별표 5 호 서식에 의한 사후관리카드"로 한다.

제 9 조 제 1 항중 "별표 5 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대 실적보고서"를

"별표 6 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대 실적보고서"로 하고 제 2 항중

"별표 6 호 서식에 의한 지정업체 사후관리보고서"를 "별표 7 호 서식에 의한 지정업체 사후관리보고서"로 "별표 7 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성과분석표"를 "별표 8 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성과분석표"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1973.11.1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 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 요령 ( 개정 ) 신규 대비

현 황	개 정	개 정 이 유	비 고
<p>제 1 조 ( 목적 ) 이 요령은 상공부고시 제 8290 호에 의하여 내수산업 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수출품생산 업체 또는 수출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업체를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이하 지정업체라 한다) 로의 지정과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 지정대상 )</p> <p>① 생 락</p> <p>② 생 락</p>	<p>제 1 조 ( 목 적 ) 이 요령은 상공부고시 제 8290 호 및 동 개정 고시 ( 제 8550 호 제 8989 호 제 9327 호 ) 에 의하여 내수산업 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품생산 업체 또는 수출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업체를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이하 지정업체라 한다) 로의 지정과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 지정대상 )</p> <p>① 전 동</p> <p>② 전 동</p> <p>③ 섬유류 생산자중</p>	<p>상공부고시 제 8290 호의 일부 개정고시로 인함.</p>	

현 황	개 정	개 정 이 유	비 고
<p>제 3 조 ( 지정 절차 ) ①이 요령에 의한 지정은 정기적으로 년 2 회 ( 3 월, 9월 ) 로 하되 신 청일시 신청서류 신청 절차등 신청요령은 별 도 공고로 정한다.</p>	<p>섬유시설등록요령 ( 상공 부고시 제 6238 호 71. 1.6 ) 에 의거 등록을 요하는 자는 동요령에 의한 등록을 필한자라 야 한다.</p> <p>제 3 조 ( 지정 절차 ) ①이 요령에 의하여 수출품 생산지정업체로 지정될 받고자 하는 자는 별 표제 1 호의 서식에 의한 수출품생산지정업체 지정신 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1 일부터 10 일 까지 사이에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또는 출장소 ( 산업과 ) 에 체 출한다.</p>	<p>현재에는 년 2 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공고지정하고 있어 지정신 청기간이 경 과하면 6 개 월간은 신규 지정이 불가 능하여 수출 업체의 지원 업무를 효과 적으로 수행 할 수 없으 므로 이를 월 1 회씩 정 기적으로 지 정하여 적극 적으로 지원 토록 하므로</p>	



현 황	개 정	개 정 이 유	비 고
<p>②시장은 전항에 의하여 지정신청을한 업체를 별표 1에 의한 선정기준과 평점방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60점이상인 업체만을 선정한다.</p>	<p>②전항의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출장소장포함)은 신청서의 적격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제서류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때는 이를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미비할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보완제출토록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전항에 의하여 구청장 및 출장소장이 전달한 지정신청서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실시한후 별표 2에 의한 선정기준과 평점방법에 의하여 평점하고 50점이상인 업체만을 선정지정하고 이</p>	<p>서 100억불 수출목표달성에 기여코저 함.</p> <p>②전항 개정 에 따른 개정임.</p> <p>③전항 개정 에 따른 개정임.</p>	

현 황	개 정	개 정 이 유	비 고
<p>제 4 조 ( 지정 공고 ) ① 시 장은 전조에 의하여 선정한 업체를 즉시 지정 공고하고 이를 상공부장관과 중소기업 은행장에게 통고한다. ②.....별표 2 호서식의 지정서.....</p> <p>제 5 조 ( 자금 지원 ) 생 략</p> <p>제 6 조 ( 지정 취소 ) ①.....생 략 ②.....별표 3 호서식에 의한 지정취소요구..... 생 략 ③ 생 략 ④ 지정취소는 정기적으 로 년 2 회 ( 3 월 9 월 ) 로 하되 폐업의 경우 는 취소할수 있다.</p> <p>제 7 조 ( 대체 지정 ) ① 전</p>	<p>에 미달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즉시 신청인 에게 반려하여야 한다</p> <p>제 4 조 ( 지정 공고 ) ① 시 장은 전조에 의하여 선정한 업체를 매월 말일내에 지정공고하 고 이를 상공부장관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통 고한다. ②.....별표 3 호서식의 지정서.....</p> <p>제 5 조 ( 자금 지원 ) 전 동</p> <p>제 6 조 ( 지정 취소 ) ①.....전 동 ②.....별표 4 호서식에 의한 지정취소요구..... ③ 전 동 ④ 지정취소는 정기적으 로 월 1 회로하되 폐업 의 경우는 수시로 취 소 할수 있다.</p> <p>제 7 조 ( 대체 지정 )</p>	<p>① 전제 3 조 개정에 따른 개정임</p> <p>① 전제 3 조</p>	

현 황	개 정	개 정 이 유	비 고
<p>조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새로 선정하는 수가 취소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한다.</p>	<p>①.....삭 제.....</p>		
<p>② 전항에 의한 지정절차는 제 2 조 제 3 조 및 제 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경우에 불구하고 60 점미만의 업체라도 지정할 수 있다.</p>	<p>②.....삭 제.....</p>		
<p>③.....생 략.....</p>	<p>③.....제 1 항으로 한다</p>	<p>① 전제 1 항 삭제로 인함</p>	
<p>④.....생 략.....</p>	<p>④.....제 2 항으로 한다</p>	<p>② 전제 2 항 삭제로 인함</p>	
<p>제 8 조 ( 사 후 관 리 )</p>	<p>제 8 조 ( 보 고 )</p>		
<p>①.....생 략.....</p> <p>②.....별표 4 호서식에 의한 사후관리 카드...</p>	<p>①.....전 동.....</p> <p>②.....별표 5 호서식에 의한 사후관리카드</p>	<p>① 전제 3 조 개정으로 인함</p>	
<p>제 9 조 ( 보 고 ) ①.....별 표 5 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대 실적보고서...</p>	<p>제 9 조 ( 보 고 ) ①.....별 표 6 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대 실적보고서</p>	<p>① 전제 3 조 개정으로 인함</p>	

현 황	개 정	개 정 이 유	비 고
<p>②.....별표 6 호서식 에 의한 지정업체 사 후관리 보고서..... 별표 7 호서식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시책성과 분석표.....</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p> <p>2. ....생 략.....</p> <p>3. ....생 략.....</p>	<p>②.....별표 7 호서식 에 의한 지정업체 사 후관리 보고서..... .....별표 8 호서식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시 책 성과분석표.....</p> <p>1. 이 요령은 1973.11 1 일부터 시행한다.</p> <p>2. ....전 동.....</p> <p>3. ....전 동.....</p>	<p>전제 3 조 개정 으로 인함.</p>	
<p>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지정및자금지원요령</p> <p>제 1 조 ( 목적 ) 이 요령은 상공부 고시 제 8290 호 및 동개정고시 ( 제 8550 호, 제 8989 호, 제 9337 호 ) 에 의하여 내수산업 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p>		<p>육육성하기 위하여 수출품 생산업 체 또는 수출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업체를 수출품 생산 지 정업체 (이하 지정업체라 한다) 로의 지정과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제 2 조 ( 지정대상 ) ① 이 요령에 의한 지정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상공부장관이정한 유형구분에 의한 제 1 및 제 2 유형에 분류된 품목생산자중 서울특별시에 공장등록을하고 수출품생산 및 수출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연간 수출실적이 3 만불 이상이거나 수출계획이 5 만불 이상인 업체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가입자 하위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조합가입이 불가능한 업종 생산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4 조 (업종분류) 별표의 분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생산자는 협동조합가입자가 아니라도 대상으로 할수있다.

② 광업, 운송업 및 상업 기타 서비스업을 경영하는자는 이요령에 의한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섬유류 생산자중 설유시설 등록요령 ( 상공부공고제 6238 호 71.1.6 ) 에 의거 등록을 요하는자는 동 요령에 의한 등록을 필한자라야 한다.

제 3 조 ( 지정절차 ) ① 이요령에 의하여

수출품생산 지정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첨제 1 호의 서식에 의한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1 일부터 10 일까지 사이에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또는 출장소 ( 산업과 ) 에 제출한다.

② 전항의 수출품 생산지정업체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 ( 출장소장 포함 ) 은 신청서의 적격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제서류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매월 15 일까지 시장에게 전달하여야하며 미비할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보완제출토록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항에 의하여 구청장 및 출장소장이 전달한 지정신청서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실시한후 별표 2 에 의한 선정기준과 평점방법에 의하여 평점하고 50 점이상인 업체만을 선정지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즉시 신청인에게 반려한다.

제 4 조 ( 지정공고 ) ① 시장은 전조에 의하여 선정한 업체를 매월말일 이내에 지정공고하고 이를 상공부 장관

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통고한다.

(2)서울특별시장은 전항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별표 3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 5 조 ( 자금지원 ) 서울특별시장은 지정업체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중소기업 육성 재정자금을 지원할수 있다.

- 1. 시책명.....수출전환업체 지원 자금
- 2. 자금부분.....시설자금
- 3. 재 원.....상공부장관이 신규로 배정한 자금과 기 지원자금의 회수 자금으로 한다.
- 4. 지원 한도.....기 지원자금의 대출잔액을 포함하여 20,000,000 원 이내로 한다.
- 5. 지원 비율.....소요자금의 70% 이내로 한다.
- 6. 지원 방법.....지원대상, 지원신청절차, 지원대상 결정방법등 지원방법은 별도 공고로 한다.

제 6 조 ( 지정의취소 ) ①시장은 지정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그지정을 취소할수 있다.  
가. 지정후 6개월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때

나. 지정후 매 년연간 수출실적이 5만불이하인 업체

다. 육성결과 내기업으로 전환되어 계속 육성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

라. 소정서류 또는 보고서 제출등이 요령에 의한 지정업체 운용에 필요한 지시 또는 조치에 불응하거나 기타 계속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

(2)지정의 취소는 관할 구청장의 별표 4호 서식에 의한 지정 취소요구와 상공부장관의 지시 또는 기타 행정기관의 협조요청에 의하여 계속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때 취소공고하고 상공부장관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통고한다.

(3)중소기업은행장은 전항에 의한 취소통고를 받았을때에는 즉시 취소업체에 대하여 기대출자금은 회수조치를 취하고 미대출자금은 대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4)지정취소는 정기적으로 월 1회로하되 폐업의 경우는 수시로 취소할수 있다.

제 7 조 ( 대체지정 ) ① 지정업체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변경된업체를 대체지정 공고하고 상공부장관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통고한다.

- 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된 경우
- 나.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된 경우
- 다.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② 지정업체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경 공고하고 상공부장관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통고한다.

- 가. 업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나. 업체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라. 생산품명이 변경된 경우

제 8 조 ( 사후관리 ) ① 관할 구청장은 지정업체의 효율적인 육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정업체에 대하여 보고서 기타 필요한것을 징구할 수 있다.

② 관할구청장은 지정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별표 5 호 서식에 의한 사후관리카드를 업체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 보고 ) ① 지정업체는 관할구청장에게 별표 6 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내 실적보고서를 익월 3 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장에게 별표 7 호서식에 의한 지정업체 사후관리보고서를 익월 5 일까지 별표 8 호서식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시책 성과분석표를 매분기초 10 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요령은 1973.11.1 부터 시행한다.
2.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기하 지정된 지정업체는 이 요령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지정업체운용요령 (71.2.23 자 공업 1332-1122 호) 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호서식)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목: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 지정신청  
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 ) 에 의거 회사가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로 지정받고자 별첨과 같이 사업계획서  
및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부: 사업계획서 및 관계 증빙서류

197 . . . . .

신청인주소

기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계획서 (안)

1. 기업체개요

가. 기업체명:

나. 소재지: (본사) (전화)

(공장) (전화)

다. 대표자:

라. 업 종: 생산품명:

마. 기업형태: 합명, 합자, 주식, 유한, 개인

바. 창립년월일:

아. 가입한 협동조합 (명칭)  
(가입년월일)

자. 자산총액 (19. . . 현재)

유동자산 원 (타인 자산 원)

고정자산 원 ( " 원)

기 타 원 ( " 원)

계 원 ( " 원)

41-16



차. 종업원수 ( 1973 . . . 현재 )

구 분	상 시			임 시			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사 무 직									
기 술 직									
기 타									
계									

카. 사업개요 ( 기업체 연혁 기타 전반적인 사항 )

타. 생산공정도

※첨 부 서 류

1. 영업감찰 및 법인 등기부 등본
2. 공장등록 증명서
3. 협동조합 가입확인서
4. 재무제표
5. 섬유류 생산업체, 섬유시설 등록필증
6. 외국환은행 발행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 내국신용장 및 수출용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한 입금증명 포함 )
7. 세관발행 수출완료 증명서
8. 세무서발행 수출업체에 대한 영업세 면세증명서
9. 수출 신용장
10. 해외공판장이 확인한 수출계획서 또는 주문서
11. 상공부고시 제 5064 호 제 2 조 제 6 항에 의한 수출용 원자재 구매 승인서
12. 기타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2. 시설 현황

가. 부동산

용도	소재지	지 호 또는구조	수 량	소 유 자	단 가	금 액	비 고 (신증설보수의 필요성여부)

나. 시설

용도	소재지	지 호 또는구조	수 량	소 유 자	단 가	금 액	비 고 (신증설개보수의 필요성여부)

3. 생산능력 및 생산판매계획

품명	규격	단위	생산능력		생 산 및						
			수량	금액	1973 년 도						
					생 산		국 내 판 매		국외판매(수출)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천원		천원		천원			\$

4. 생산 및 판매실적

품명	규격	단위	1972 년					
			생 산		판 매			
			수량	금액	국 내 판 매		국외판매(수출)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천원		천원			\$

첨부서류 : 1. 수출실적증명 (수출대금입금증명, 수출완료증명 (기타입증서류))

판 매 계 획 ( 전 망 )											
1974 년						1975 년					
생 산		국내 판매		국외판매(수출)		생 산		국내 판매		국외판매(수출)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1973 년 ( 환 로 )						1973 년 ( 진 행 )					
생 산		판 매		생 산		판 매		생 산		판 매	
수량	금 액	국내 판매		국외판매(수출)		수량	금 액	국내 판매		국외판매(수출)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2. 수출계획증명 ( 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기타입증서류 )

5. 가 득 액 및 계 산 서

수 출				수 입				가 득 액 (%)	가 득 율 (%)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주 : 가 득 액 = 수출금액 ( FOB ) ( 또는 운 남 금 액 ) - 수 입 금 액 ( CIF )

$$\text{가 득 율} = \frac{\text{가 득 액}}{\text{수출금액 ( C/L Value )}} \times 100$$

6. 기술관계 1) 외국과 대비기입 할것

2) 외국과 대비 불능시는 타에 모범이 되는 제품의

특징

가. 기술 면

나. 품질 면

다. 포장 면

라. 검사 면 ( 검사시설 포함)

7. 수출용 원료대책

가. 원료 구입경로

나. 원료구입상 애로사항

8. 기타 특기사항

197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가업 체명

대표자

㉠

(별표 2)

수출품생산지정업체 선정기준 과평점 방법

1. 수출실적 (연간)		50	점
가. 100,000 불 이 상		50	점
나. 70,000	"	40	점
다. 50,000	"	30	점
라. 30,000	"	20	점
마. 10,000	"	10	점

수출실적 확인서류

- 1) 외국환은행 발행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및 수출용원자재 구매승인서예의 입금증명 포함)
- 2) 세관발행의 수출완료 증명서
- 3) 세무서 발행의 수출업체에 대한 영업세 면세증명서

2. 수출계획		30	점
가. 100,000 불 이 상		30	점
나. 50,000 불	"	20	점
다. 10,000 불	"	10	점

수출계획 확인서류

- 1) 수출신용장
- 2) 해외공관장이 확인한 수출계획서 또는 주문서
- 3) 상공부고시 제 5064 호 제 2 조 제 6 항에 의한 수출용 원자재  
구매승인서

3. 외화가득율		20	점
가. 외화가득율 50% 이상		20	점
나. 외화가득율 10% ~ 50% 까지		10	점

외화가득율 산출방법

$$\frac{\text{수출액} - \text{원자재수입액}}{\text{수출액}} \times 100$$

수출액



(별표 3 호서식)

계 호

수출품 생산 지정 업체 지정서

주 소

기업체명

대표자

위 기업체를 서울특별시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로 지정함.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별표 4 호서식)

수출품생산지정업체 지정취소요구서

1. 지정업체 개요

지정번호 제 호 ( 년 월 일 )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생산품

지정취소사유

2. 지정취소에 대한 의견

년 월 일

○ ○ ○ 구 청 장 인

별표 5 호서식 )

채정부분시설자금융자업체 사후관리카-드

(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

1. 기업체 개요

기업체명	선정당시		변경후		회사설립년월일	19	년	월	일
소재지	본사	TEL	대표자성명	선정당시	자본금 ( 불입자본금 )				
	공장	TEL		선정후	기업형태	법인	개인 ( 해당란에 <input type="radio"/> 표 )		

2. 융자상황

자금별	융자결정액	응수인액	대출상황				미대출사유	비고
			대출일자	대출액	미대출액	계		

3. 융자금 상환 상황

대출상황			회수계획		회수실적		회수부진사유	비고
대출일자	시책별	대출금액	상환예정일자	상환예정금액	회수일자	회수금액		

4. 시설상황

용자전		용자내					용		
시설명	보유수	시설명	수량	난가	금액	완공예정일	진도	부진사유	비고

42-28 제 412 호

시

보

1973.11.1.

128

( 25 cm x 30 cm )

2104

※ 카드이면

5. 생산상황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응 생 자 산 전 년 도 실 적	응 자 후																	
		1/4			2/4			3/4			4/4			계					
		계	획	실적	%	계	획	실적	%	계	획	실적	%	계	획	실적	%		

6. 수출상황 단위 : \$

구분 년도별	응 자 전 년 도 수 출 실 적	응 자 후																	
		1/4			2/4			3/4			4/4			계					
		계	획	실적	%	계	획	실적	%	계	획	실적	%	계	획	실적	%		

7. 고용상황

구분 성별	응 자 전			응 자 후		
	기	술	자	기	술	자
남						
여						
합						
계						

8. 사후 판리상의 참고사항 및 기타사항 ( 25 cm × 30 cm )

제 402 호  
지  
보  
1973.11.1  
42-29

44-28

129

(별표 6호 서식)

사업계획대실적보고

1. 생산상황

용자전년도말 생산실적	품목	용자후생산상황			
		월별	계획	실적	%
원					

2. 수출상황

용자전년도말 수출실적	품목	용자후수출상황			
		월별	계획	실적	%
\$					

3. 고용효과

구분	용자전			용자후		
	기술자	기타	계	기술자	기타	계
성별						
남						
여						
합계						

4. 재정자금용자 및 상환 상황

시책별 (자금별)	용자년월일	용자액	상환액	상환일자	잔액
		원	원		원

회사  
대표 (인)

(별표 7 호서식)

구

분류번호 1332 ~

197

경 유 보고통제관

발신

구청장

인

수 신 서울특별시장

참 조 공업과장

수출품생산지정업체사후관리 보고서 ( 월분 )

종	별	월	보
승인번호	공업제 3 호		
보고기일	익월 5 일		

지정 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수출목표	전월말 실적누계	금월실적	금월말 실적누계	상대국	금월생산액	고용 원수
								(원)	

(별표 8 호서식)

분류기호:

중 소 기 업 육 성

수 신:

승인번호: 7508-4-16-D

계 목:

시 책 별	기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생 산 상 황							수 출 상 황						
				금 년 도 적	금 목 년 도 표	/ 분 기				실 누 적 계	부 비 표 대 (%)	전 년 도 적	금 목 년 도 표	/ 분 기			
						월 중	월 중	월 중	계					월 중	월 중	월 중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불	천불	천불	천불	천불	천불

서울특별시장 귀하

11508-4-16-D

71.11 승인

시책 성과 분석표 1973. 11. 1. 발신 구청장

항		교 용 호 과							불실업 체에 대한 조치	
실누 적계	목비 표대 (%)	전실 년도 (%)	금부 년도표	분기				실누 적계	목비 표대 (%)	
				월중	월중	월중	제			
천불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서울특별시공고제 202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지정 및 지정취소공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  
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3 조  
및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함

서울특별시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  
업체와 지정취소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3.10.26.

서울특별시

지 정 업 체

지정 번호	기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수출품명	비고
211	인선섬유공업사	홍영수	중구 광희동 2 가 221	웨 타	
212	주식회사삼중앙	이완순	중구입정동 9	피혁, 의복	
323	삼애기업사	양두석	동대문구제기동 1036	웨타, 짜켈	
324	주식회사왕중사	이수환	" 창신동 436-65	피혁, 의복	
325	울지섬유공업사	이시목	" 휘경동 68-3	웨 타	
326	주식회사서울공사	박승희	" 중화동 428	가스미터케블	
327	영일화성상사 주식회사	조선환	" 상봉동 364-3	인삼제품	
328	주식회사유미양행	진성준	" 창신동 447-12	피복류	
329	주일산업주식회사	박종만	" 면목동 965-3	가늌섬 앨범	
407	공흥기업주식회사	김윤봉	성동구구의동 218-15	피복류	
432	신성기업사	박윤제	" 군자동 184	가구류, 탁자	

지정 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비고
435	동화섬유공업사	홍규성	성동구금호동 4가 548 - 1	쉐타	
445	승한섬유공업사	이원택	" 성수동 2가 225 - 1	양말	
450	공영전기제작소	이현옥	" 구의동 29 - 3	다 이 오 드 짜 미 스타	
452	금성교역주식회사	박봉용	" 성수동 2가 57 - 12	누빔타면수지	
468	대안교역주식회사	안정삼	" 성수동 167 - 51	쉐타의부봉제	
476	동아피아노제작소	이병근	" 능동 451 - 26	피아노	
552	삼마양말공업사	김용태	성북구정릉동 192 - 307	양말	
553	삼광염직공업사	강시황	" 하월곡동 81의 9	염색	
555	대동양행	김시철	" 종암동 40 - 2	완구	
704	조흥공업사	배희철	마포구도화동 181 ~ 36	공강용공구제 재기기계용수물	
711	동양수출산업사	이형철	" 합정동 356 ~ 4	앨범	
714	금강디자인센타	김중호	" 서교동 374 - 10	제도디자인	
719	세진실업	최상운	" 노고산동 109 - 4	수출용전구	
803	보성산업사	최행익	" 한강로 2가 319	각종바스켈	
812	나진산업주식회사	이병두	용산구한강로 2가 15 - 3	전자스파카	
813	합자회사케이 비김상회	김국배	" 이태원동 9 - 3	쉐타	
815	동양부장산업사	박의영	" 문배동 7의 10	신사복	
917	대성기업사	조중현	영등포구양평동 4가 79 - 3	천막가방	
934	용창금속공업(주)	변재열	" 구로동 685-200	비드와이어 선철	
956	태광화학공업(주)	김준홍	" 양평동 4가 93	고무가루족 진제유화소다	
958	엘비엘통상(주)	이제용	" 독산동 309 - 12	접착제(끈끈이)	
971	서일공업사	박유재	" 신정동 308 - 1	주방용생크	
973	주식회사환금공작소	윤홍명	" 도림동 272 - 1	주물땀푸기	
1101	남창양말공업사	이순호	관악구대방동 433 - 32	양말	
1102	가림기업사	이정순	" 노량진동 24 - 16	쉐타	

지정 번호	기업·제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비고
1103	보성섬유공업사	최면훈	관악구대방동 437 - 3	양말	
1104	동창염직공업사	박정선	" 상도동 255	염색	
1201	보성직물공장	전순철	성동구풍납동 357 - 16	인견직물	
1202	한국모피공업(주)	이대경	" 거여동 178 - 13	각종모피	
1401	풍성기업주식회사	김창홍	서대문구역촌동 218	법포지천막지	
1402	미도복장산업사	설관의	서 " 홍은동 277 - 7	양복	
1501	원풍화학주식회사	서원선	영등포구가야동 51 - 3	합성피혁	
1502	동양진주무역(주)	김진환	" " 39 - 2	단추패각	
1503	오오공예사	권영각	" 목동 27 - 22	목각설각 나전칠기	
814	미릉사	민종태	용산구이태원동 211 - 9	나전칠기	
972	대일화학공업(주)	박수용	영등포구문래동 6가 38	네오파스테루	
계		47			

지정취소업체

지정 번호	기업·제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취소사유
407	동양금속공업Co	홍보래	성동구능동 450	주물	제보고불이행
432	문성산업사	김규현	" 옥수동 2	웨타	"
435	광신염직공업사	김고홍	" 성수동 2가 52-15	염색	"
445	왕자물산Co	김기만	" 송정동 25 - 24	메리야스	"
450	국제전광사	이태영	" 성수동 2가 260	시계	"
452	합명회사인선사	신덕균	" 성수동 2가 821	노트	"
468	동남전자Co	박청명	" 송정동 352	라디오	"
476	효창공업Co	김진호	" 화양동 235 - 5	목공예조각	"
552	동원섬유Co	이기철	성북구하월곡동 48 - 1	까운샤쓰	휴업
704	중앙공예공업사	이승혁	마포구신수동 62 - 9	공예품	"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취소사유
711	경인갈포공업사	이원배	마포구대흥동 762	갈포벽지	원주공업단지이주
714	성도섬유공업사	최무정	" 염리동 105	쉐타	구로동공업단지이주
719	우성무역주식회사	박찬인	" 공덕 2 동 140	가발	사업부진으로폐업
803	명성산업Co	곽명열	용산구이태원동 108	여행용가방	"
917	성리물산주식회사	김희범	영등포구신도림동 870-1	목각공예품	수출실적무
958	상원실업Co	기획성	" 구로동 792-33	갈포벽지	폐업대전으로폐업
934	용진조차공업사	신동일	" 신도림동 309-3	유리컵	휴업
956	도래미상사Co	임승구	" 고척동 156-1	의복	공장화재로인업 하여폐업

부 적 격 업 체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부적격사유
반도금속공업사	한철준	동대문구전농동 647-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한 협동조합 미가입
삼양석재공업주식회사	음수곤	동대문구망우동 359	공장소재불명 및 수출실 적이 부산소유공장실적이 며 서울실적이 부족함.
서울사무기계주식회사	민석근	성동구하왕십리동 762-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 한 협동조합 미가입.
신대양산업주식회사	위창욱	" 금호동 4가 97	"
동도카베트공업사	김재식	도봉구도봉동 178	"
성림산업사	임종무	" 창동 629	섬유류시설등록미등록
봉춘미술사	김재수	용산구한강로 1가 37-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 한 협동조합 미가입.
대한공업사	장계영	" 후암동 110-2	"
한국일흥주식회사	김영규	" 한강로 3가 40-428	①협동조합 미가입 ②수출실적전무 ③공장시설무
신흥기계제작소	조기정	영등포구고척동 76-183	평점수 60 점미만
국진기업주식회사	김연순	" 시흥동 663-5	협동조합 미가입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부 적 격 사 유
서울바리큰상사	성 상 현	판악구신림동 438-3	평점수 60 점 미만
로얄금속공업사	박 흥 집	성동구뚝남동 164	협동조합미가입
성림통산주식회사	신 현 옥	서대문구녹번동 144-65	"
삼천리산업주식회사	이 장 균	영등포구영창동 61 의 8	중소기업상한규정저촉
삼성불제공업(주)	김 재 환	성동구화양동 167-51	협동조합미가입
대한주철제작소	김 인 배	" 구의동 320	평점수 60 점 미만

◎ 서울특별시공고제 204호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제 23호(73.2.13)로 일부준공조치된바있는 연희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잔여지의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조제 1 항 및 제 46 조 제 3 항의 규정과건설부고시제

123호(73.4.4)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3. 10. 30

서울특별시장

1. 사업집행지 : 지대 서대문구 연희동산 114-7 의 1 필지  
 2. 사업의종류 :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3. 준공면적 : 총 12,409.1평 (금회준공 1,204 평)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91 별 2 순 익

5. 사업기간 : 착공 68. 9. 11  
 준공예정일 73. 5. 31  
 6. 준공년월일 : 73. 10.  
 7. 준공도면 : 별첨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207 호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  
업체 변경 공고

당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의 상호(기업체명) 변경사항을 서  
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

체지정 및 자금지원요령제 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한다.

1973. 10.

서울특별시장

1. 변경지정

기 지 정					변 경 지 정				
지정 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지정 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441	계양봉제 공업사	김봉환	성동구성수동 2가314-16	봉제품 (의류류) (피복)	441	계양봉제 주식회사	김봉환	성동구성수동 2가314-16	봉제품 (의류류) (피복류)
630	진성 실업사	최홍용	서대문구 역촌동17-3	사진앨범	630	진성상역 주식회사	최홍용	서대문구 역촌동17-3	사진앨범

사 령

◎ 1973.9.7

운수 3 과 지방행정  
주사보시보 국윤호  
지방행정 주사보에 입함.  
4 호봉을 급함.  
운수 3 과근무를명함.

◎ 1973.10.30

하수과 지방토목 황인정  
기 사 보  
포장과근무를 명함.  
도시가스 지방토목 이 상옥  
사 업 소 기 원  
성동구 수도사업 소근무를명함.  
성동구 지방건축 남풍승  
지원보시보  
영등포구양서출장소근무를명함.  
새마을 지방행정주사 전학성  
복지회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3.11. 1.			성북구 근무를 명함.
청 소 1과 지방행정사	안 재 환	서대문구청 지방행정사	유 병 열
중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도봉구수유1 지방행정사	김 효 창	도시행정과 지방행정사	김 규 식
마포구 근무를 명함.		보건행정과 근무를 명함.	
중기관리소 지방행정사	이 성 구	장 재 장 지방행정사	유 성 수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도시행정과 근무를 명함.	
마포구염리 지방행정사	정 중 식	영동출장소 지방행정사	정 준 상
중기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동부병원 지방행정사	임 선 빈	성동구주택과 지방행정사	유 재 신
성북구 근무를 명함.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한강건설소 지방행정사	송 재 경	중구총무 지방행정사	윤 중 혜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중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사	이 연 호	종로구시민 지방행정사	박 세 환
자동차정비창 근무를 명함.		강제장 근무를 명함.	
자동차정비창 지방행정사	한 규 익	중구시민 지방행정사	노 세 희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세정과 근무를 명함.	
동부건설사업소 지방행정사	박 정 의	용산구한남1 지방행정사	오 세 재
서부위생처리장 근무를 명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방호담당관실 지방행정사	권 명 원	성동구세무1 지방행정기	양 형 만
중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지방행정사	이 원 심		

<p>은평출장소 지방행정 불광 1 서기보</p>	문장호	<p>종로구 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 근무를 명함.</p>		<p>충북옥천군 지방행정 주사보</p>	유재응
<p>천호출장소 지방행정 서기보</p>	김세홍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관제과 근무를 명함.</p>		<p>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p>	
<p>서대문구 지방건축 은평출장소 기사보</p>	심관중	<p>3호봉을 급함.</p>	
<p>성동구 영동출장소 파견근무를 명함.</p>		<p>마포구 근무를 명함.</p>	정진숙
<p>개량 2 과 지방건축 기사보</p>	정한무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p>	
<p>서대문구 은평출장소 파견근무를 명함.</p>		<p>1호봉을 급함.</p>	
<p>용산구보건소 지방보건 기관</p>	한중수	<p>성동구 근무를 명함.</p>	양은주
<p>남부병원파견근무 ( 73.12. 31 까지 ) 를 명함.</p>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p>	
<p>서대문구 지방보건 보건소 지원보</p>	성만용	<p>1호봉을 급함.</p>	
<p>남부병원파견근무 ( 73.12. 31 까지 ) 를 명함.</p>		<p>동대문구 근무를 명함.</p>	임정애
<p>구획정리 1 과 지방토목 기사</p>	김인규	<p>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p>	
<p>개량 2 과 파견근무를 명함.</p>		<p>1호봉을 급함.</p>	
<p>토목과 지방토목 기사</p>	한규영	<p>용산구 근무를 명함.</p>	임윤자
<p>토목시험소 파견근무를 명함.</p>		<p>지방행정서기시보에 임함.</p>	
<p>대전시수도국 지방행정 서기</p>	권태섭	<p>1호봉을 급함.</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종로구 근무를 명함.</p>	이정자
<p>지방행정서기에 임함.</p>		<p>지방행정서기에 임함.</p>	
<p>3호봉을 급함.</p>		<p>6호봉을 급함.</p>	
		<p>영등포구 근무를 명함.</p>	



<p>이 용 순</p> <p>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p> <p>1 호봉을 급함.</p> <p>마포구근무를 병함.</p>	<p>지방토목기사보에 임함.</p> <p>5 호봉을 급함.</p> <p>하수과근무를 병함.</p> <p>국회사무처 토목기사 권 승 관 건설국건축과</p>
<p>이 중 숙</p> <p>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p> <p>1 호봉을 급함.</p> <p>성북구근무를 병함.</p>	<p>서울특별시전입을 병함.</p> <p>지방토목기사에 임함.</p> <p>6 호봉을 급함.</p> <p>연료과근무를 병함.</p>
<p>최 광 숙</p> <p>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p> <p>1 호봉을 급함.</p> <p>동대문구근무를 병함.</p>	<p>◎ 1973. 11. 5</p> <p>전북이리시 지방행정기 신 은 범</p> <p>서울특별시전입을 병함.</p>
<p>◎ 1973. 11. 3</p> <p>건설부인천 토목기사보 송 현 섭 축항사무소</p> <p>서울특별시전입을 병함.</p>	<p>지방행정서기에 임함.</p> <p>4 호봉을 급함.</p> <p>동대문구근무를 병함.</p>

서울특별시장